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규정명 : 학칙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요점
<신설>	<p style="color: red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제5조의2(해외사무소 등) ① 본 대학교는 해외의 학생모집,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해외사무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color: red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② 해외사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</p>	해외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red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부 칙</p> <p style="color: red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이 학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</p>	